

3. 상속세 납부의무(상증법 §3의2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상속세 납부의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속인·수유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*에 대한 상속세를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 납부 *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(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) 증여재산 포함 <input type="checkbox"/> 연대납세의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일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모든 상속인·수유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	<input type="checkbox"/> 상속세 납부의무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속인·수유자는 각자가 취득한 상속취득재산*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 *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포함 <input type="checkbox"/> 제한적 연대납세의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①상속인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②위장분할*한 경우 *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되는 자가 다른 분할 ※ 우회상속시 연대납세는 별도 규정(§27의2) - (조세채권 확보 곤란) 해당 상속인*의 상속세를 상속인간 연대납세 * 주소·거소 불분명, 상속세 납부 능력 없음, 비거주자 등 - (위장분할) 실제 귀속에 따른 상속세를 위장분할과 관련된 상속인·수유자간 연대납세

〈개정이유〉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납부의무 조정

〈적용시기〉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